

# [2015 소방시설관리사 1차] 1차 정오표 [2014.11.21]

※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 법 개정 관련 정오표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1-59 포인트	2) 공기 ~~~공기~~~~공기~~~~공기	2) 산소 ~~~산소~~~~산소~~~산소												
1-61 ⑤ ㉞	수용성액체	인화성액체												
1-72 28번 ②	Blil	Boil												
2-14 (12) ②	동력 = $rHQ$ ( $\text{kg}_f \cdot \text{m/s}$ ) = $9.8 \cdot rHQ$ ( $\text{J/s}$ ) (= W )	동력 = $rHQ$ ( $\text{kg}_f \cdot \text{m/s}$ ) = $9.8 \cdot HQ$ ( $\text{kJ/s}$ ) (= kW )												
2-20 정답	15 ②	15 ④												
2-125 12번 해설	발포 전 포무용액	발포 전 포수용액												
2-130 34번	<p>단백포소화약제를 사용하는 포소화설비의 점검장비가 아닌 것은?                      ① 포콜렉터 ② 포콘테이너 ③ 절연저항계 ④ 비중계</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font-size: small; margin: 0;">해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e0e0e0;"> <th style="text-align: center;">종류</th> <th style="text-align: center;">점검장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td> <td>포콜렉터 · 헤드취부랜치 · 포콘테이너 · 방수압력측정계 · 절연저항계 · 전류전압측정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축전지설비</td> <td>비중계 · 스포이드 · 절연저항계 · 전류전압측정계</td> </tr> </tbody> </table> </div>	종류	점검장비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포콜렉터 · 헤드취부랜치 · 포콘테이너 · 방수압력측정계 · 절연저항계 · 전류전압측정계	축전지설비	비중계 · 스포이드 · 절연저항계 · 전류전압측정계	<p>단백포소화약제를 사용하는 포소화설비의 점검장비인 것은?                      ① 포콜렉터 ② 포콘테이너 ③ 절연저항계 ④ 비중계</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font-size: small; margin: 0;">해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e0e0e0;"> <th style="text-align: center;">종류</th> <th style="text-align: center;">점검장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td> <td>헤드결합랜치 · 방수압력측정계 · 절연저항계 · 전류전압측정계</td> </tr> </tbody> </table> </div>	종류	점검장비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헤드결합랜치 · 방수압력측정계 · 절연저항계 · 전류전압측정계		
종류	점검장비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포콜렉터 · 헤드취부랜치 · 포콘테이너 · 방수압력측정계 · 절연저항계 · 전류전압측정계													
축전지설비	비중계 · 스포이드 · 절연저항계 · 전류전압측정계													
종류	점검장비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헤드결합랜치 · 방수압력측정계 · 절연저항계 · 전류전압측정계													
2-130 34번 정답	34 ④	34 ③												
2-162 문제 21번 해설	탄산수소칼륨 + 요소 $2KHCO_3 + (NH_2)_2CO \rightarrow K_2CO_3 + 2NH_3 + 2CO_2 - Q$	탄산수소칼륨 + 요소 $2KHCO_3 + (NH_2)_2CO \rightarrow K_2CO_3 + 2NH_3 + 2CO_2 - Q$												
2-281 정답	25 ②	25 ①												
3-67 TI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e0e0e0;">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공사 현장 배치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특급기술자소방기술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면적 2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li> <li>·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중급기술자 이상</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li> <li>· 연면적 1㎡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li> <li>· 연면적 5천㎡ 이상 3만㎡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li> </ul> </td> </tr> </tbody> </table>	구 분	공사 현장 배치기준	특급기술자소방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면적 2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li> <li>·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li> </ul>	중급기술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li> <li>· 연면적 1㎡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li> <li>· 연면적 5천㎡ 이상 3만㎡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e0e0e0;">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공사 현장 배치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특급기술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면적 2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li> <li>·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li> </ul>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중급기술자 이상</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li> <li>· 연면적 1만㎡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li> <li>· 연면적 5천㎡ 이상 3만㎡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li> </ul> </td> </tr> </tbody> </table>	구 분	공사 현장 배치기준	특급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면적 2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li> <li>·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li> </ul>	중급기술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li> <li>· 연면적 1만㎡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li> <li>· 연면적 5천㎡ 이상 3만㎡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li> </ul>
구 분	공사 현장 배치기준													
특급기술자소방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면적 2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li> <li>·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li> </ul>													
중급기술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li> <li>· 연면적 1㎡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li> <li>· 연면적 5천㎡ 이상 3만㎡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li> </ul>													
구 분	공사 현장 배치기준													
특급기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면적 2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li> <li>·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li> </ul>													
중급기술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li> <li>· 연면적 1만㎡ 이상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li> <li>· 연면적 5천㎡ 이상 3만㎡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li> </ul>													

3-114	① 소화설비 표	<table border="1"> <tr> <td rowspan="6">소화기구</td> <td>소화기</td> <td colspan="2"></td> </tr> <tr> <td rowspan="4">자동소화 장치</td> <td colspan="2">고체에어로졸식</td> </tr> <tr> <td colspan="2">가스식</td> </tr> <tr> <td colspan="2">분말식</td> </tr> <tr> <td colspan="2">캐비닛형</td> </tr> <tr> <td colspan="2">주방용</td> </tr> <tr> <td>자동확산 소화기</td> <td colspan="2"></td> </tr> <tr> <td rowspan="3">간이 소화용구</td> <td colspan="2">에어로졸식소화용구</td> </tr> <tr> <td colspan="2">투척용소화용구</td> </tr> <tr> <td colspan="2">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td> </tr> </table> <p>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옥외소화전설비</p> <p>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p> <table border="1"> <tr> <td rowspan="4">물분무등 소화설비</td> <td>물분무 소화설비</td> <td>미분무소화설비</td> </tr> <tr> <td>포소화설비</td> <td>이산화탄소소화설비</td> </tr> <tr> <td>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td> <td>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td> </tr> <tr> <td>분말소화설비</td> <td>강화액소화설비</td> </tr> </table>	소화기구	소화기			자동소화 장치	고체에어로졸식		가스식		분말식		캐비닛형		주방용		자동확산 소화기			간이 소화용구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투척용소화용구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물분무등 소화설비	물분무 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
소화기구	소화기																																			
	자동소화 장치	고체에어로졸식																																		
		가스식																																		
		분말식																																		
		캐비닛형																																		
	주방용																																			
자동확산 소화기																																				
간이 소화용구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투척용소화용구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물분무등 소화설비	물분무 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																																		
3-115	② 경보설비 표	<table border="1"> <tr> <td>비상경보설비 (비상벨설비, 자동식사이렌설비)</td> <td>단독경보형감지기</td> </tr> <tr> <td>비상방송설비</td> <td>누전경보기</td> </tr> <tr> <td>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td> <td>자동화재속보설비</td> </tr> <tr> <td>가스누설경보기</td> <td>통합감시시설</td> </tr> </table>	비상경보설비 (비상벨설비, 자동식사이렌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																										
비상경보설비 (비상벨설비, 자동식사이렌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																																			
3-115	③ 피난설비 표	<p>피난기구 (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 및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이 정하는 피난기구)</p> <p>인명구조기구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p> <table border="1"> <tr> <td>유도등(피난구, 통로, 객석) 및 유도표지, 피난유도선</td> <td>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td> </tr> </table>	유도등(피난구, 통로, 객석) 및 유도표지, 피난유도선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유도등(피난구, 통로, 객석) 및 유도표지, 피난유도선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3-115	<p><b>2</b> 내용</p>	<p><b>2 소방시설등</b></p> <p>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b>대통령령</b>으로 정하는 것</p> <p>-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방화문, 방화셔터</p>																													
3-115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49 403 470 464">공동주택</td> <td data-bbox="479 403 600 464">아파트</td> <td data-bbox="609 403 1218 464">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td> </tr> <tr> <td data-bbox="349 470 470 576">공동주택</td> <td data-bbox="479 470 600 576">기숙사</td> <td data-bbox="609 470 1218 576">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td> </tr> </table>	공동주택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245 403 1366 464">공동주택</td> <td data-bbox="1375 403 1496 464">아파트 등</td> <td data-bbox="1505 403 2128 464">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td> </tr> <tr> <td data-bbox="1245 470 1366 576">공동주택</td> <td data-bbox="1375 470 1496 576">기숙사</td> <td data-bbox="1505 470 2128 576">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td> </tr> </table>	공동주택	아파트 등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공동주택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공동주택	아파트 등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3-116	상부 표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1245 595 1339 668">구분</th> <th data-bbox="1348 595 1765 668">건축물에 해당 용도</th> <th data-bbox="1774 595 1917 668">바닥면적의 합계</th> <th data-bbox="1926 595 2125 668">바닥면적 합계 이상시 용도</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1245 675 1339 1489" rowspan="8">근린 생활 시설</td> <td data-bbox="1348 675 1765 748">수퍼마켓, 일용품(식품, 의류, 완구, 서적 등) 등의 소매점</td> <td data-bbox="1774 675 1917 748">1천 m<sup>2</sup> 미만</td> <td data-bbox="1926 675 2125 748">판매시설 (상점)</td> </tr> <tr> <td data-bbox="1348 754 1765 828"><u>의약품·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u></td> <td data-bbox="1774 754 1917 828">1천 m<sup>2</sup> 미만</td> <td data-bbox="1926 754 2125 828">-</td> </tr> <tr> <td data-bbox="1348 834 1765 978"><u>학원, 고시원</u> ※ 자동차학원: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 무도학원: 위락시설</td> <td data-bbox="1774 834 1917 978">500 m<sup>2</sup> 미만</td> <td data-bbox="1926 834 2125 978"><u>교육연구시설</u> <u>숙박시설</u></td> </tr> <tr> <td data-bbox="1348 984 1765 1128">탁구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등</td> <td data-bbox="1774 984 1917 1128">500 m<sup>2</sup> 미만</td> <td data-bbox="1926 984 2125 1128">운동시설</td> </tr> <tr> <td data-bbox="1348 1134 1765 1208">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결혼상담소, 출판사, 서점 등</td> <td data-bbox="1774 1134 1917 1208">500 m<sup>2</sup> 미만</td> <td data-bbox="1926 1134 2125 1208">업무시설</td> </tr> <tr> <td data-bbox="1348 1214 1765 1287"><u>제조업소, 수리점</u></td> <td data-bbox="1774 1214 1917 1287">500 m<sup>2</sup> 미만</td> <td data-bbox="1926 1214 2125 1287"><u>공장</u></td> </tr> <tr> <td data-bbox="1348 1294 1765 1409">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td> <td data-bbox="1774 1294 1917 1409">500 m<sup>2</sup> 미만</td> <td data-bbox="1926 1294 2125 1409">판매시설(상점)</td> </tr> <tr> <td data-bbox="1348 1415 1765 1489">공연장 또는 종교집회장</td> <td data-bbox="1774 1415 1917 1489">300 m<sup>2</sup> 미만</td> <td data-bbox="1926 1415 2125 1489">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td> </tr> </tbody> </table>	구분	건축물에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	바닥면적 합계 이상시 용도	근린 생활 시설	수퍼마켓, 일용품(식품, 의류, 완구, 서적 등) 등의 소매점	1천 m <sup>2</sup> 미만	판매시설 (상점)	<u>의약품·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u>	1천 m <sup>2</sup> 미만	-	<u>학원, 고시원</u> ※ 자동차학원: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 무도학원: 위락시설	500 m <sup>2</sup> 미만	<u>교육연구시설</u> <u>숙박시설</u>	탁구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등	500 m <sup>2</sup> 미만	운동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결혼상담소, 출판사, 서점 등	500 m <sup>2</sup> 미만	업무시설	<u>제조업소, 수리점</u>	500 m <sup>2</sup> 미만	<u>공장</u>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500 m <sup>2</sup> 미만	판매시설(상점)	공연장 또는 종교집회장	300 m <sup>2</sup> 미만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
구분	건축물에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	바닥면적 합계 이상시 용도																												
근린 생활 시설	수퍼마켓, 일용품(식품, 의류, 완구, 서적 등) 등의 소매점	1천 m <sup>2</sup> 미만	판매시설 (상점)																												
	<u>의약품·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u>	1천 m <sup>2</sup> 미만	-																												
	<u>학원, 고시원</u> ※ 자동차학원: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 무도학원: 위락시설	500 m <sup>2</sup> 미만	<u>교육연구시설</u> <u>숙박시설</u>																												
	탁구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등	500 m <sup>2</sup> 미만	운동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결혼상담소, 출판사, 서점 등	500 m <sup>2</sup> 미만	업무시설																												
	<u>제조업소, 수리점</u>	500 m <sup>2</sup> 미만	<u>공장</u>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500 m <sup>2</sup> 미만	판매시설(상점)																												
	공연장 또는 종교집회장	300 m <sup>2</sup> 미만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																												

		<table border="1"> <tr> <td>후계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 등</td> <td>150 m<sup>2</sup> 미만</td> <td>단란주점은 위탁시설</td> </tr> <tr> <td colspan="3">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산후조리원, 안마원, 안마시술소</td> </tr> <tr> <td colspan="3">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 사진관, 표구점, 독서실, 장의사, 동물병원 등</td> </tr> </table>	후계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 등	150 m <sup>2</sup> 미만	단란주점은 위탁시설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산후조리원, 안마원, 안마시술소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 사진관, 표구점, 독서실, 장의사, 동물병원 등		
후계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 등	150 m <sup>2</sup> 미만	단란주점은 위탁시설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산후조리원, 안마원, 안마시술소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 사진관, 표구점, 독서실, 장의사, 동물병원 등											
3-128	<b>1</b> (1) 요청자 - 건축허가등(신축·증축·개축· <u>재출</u> ·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b>1</b> (1) 요청자 - 건축허가등(신축·증축·개축· <u>재출</u> ·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3-129	<b>5</b> (1) ①	<b>5</b> 허가 등의 기간 (1) 회신기간 ① 접수한 날부터 5일 - 다른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적합 여부 요청 시 7일 이내									
3-135	예제 4번 위	<table border="1"> <tr> <td>자동화재탐지설비</td> <td>•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감지·수신·경보기능을 말한다)과 성능을 가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td> </tr> <tr> <td>옥내소화전</td> <td>•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 설치 시 면제된다.</td> </tr> <tr> <td>자동소화장치</td> <td>•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미분무소화설비 설치 시 면제된다.</td> </tr> </table>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감지·수신·경보기능을 말한다)과 성능을 가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옥내소화전	•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 설치 시 면제된다.	자동소화장치	•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미분무소화설비 설치 시 면제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감지·수신·경보기능을 말한다)과 성능을 가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옥내소화전	•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 설치 시 면제된다.										
자동소화장치	•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미분무소화설비 설치 시 면제된다.										
3-138	<b>5</b> (1)	<b>5</b> 방염성능의 검사 (1) 방염대상물품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 이어야 한다. -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 목재의 경우 시·도지사가 방염성능검사 실시									

3-141	<p>(4) 방염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p> <p>①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② 방염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p>	<p>(4) 방염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p> <p>①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② 방염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 미통보 및 거짓으로 알린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p>																															
3-144	<p>포인트 5번, 6번, 9번, 10번 삭제하면 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위반사항</th> <th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행정처분기준</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1차</th> <th style="text-align: center;">2차</th> <th style="text-align: center;">3차</th> </tr> </thead> <tbody> <tr> <td>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등록취소</td> <td></td> <td></td> </tr> <tr> <td>2. 어느 하나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등록취소</td> <td></td> <td></td> </tr> <tr> <td>3.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등록취소</td> <td></td> <td></td> </tr> <tr> <td>4.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기술인력이 퇴직 하거나 해임되어 30일 이내에 재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경고</td> <td style="text-align: center;">3개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등록취소</td> </tr> <tr> <td>5. 등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경고</td> <td style="text-align: center;">등록취소</td> <td></td> </tr> <tr> <td>6.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방염처리한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3개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6개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등록취소</td> </tr> </tbody> </table>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록취소			2. 어느 하나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			3.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등록취소			4.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기술인력이 퇴직 하거나 해임되어 30일 이내에 재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경고	3개월	등록취소	5. 등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경고	등록취소		6.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방염처리한 경우	3개월	6개월	등록취소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록취소																																
2. 어느 하나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																																
3.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등록취소																																
4.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기술인력이 퇴직 하거나 해임되어 30일 이내에 재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경고	3개월	등록취소																														
5. 등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경고	등록취소																															
6.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방염처리한 경우	3개월	6개월	등록취소																														
3-148	(5) 신고 ①	<p>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안전 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b>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b>하여야 하며 <b>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신고인</b>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3-150	<p><b>6</b>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내용 변경</p>	<p><b>6</b>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2급 및 1급 중 11층 이상 으로서 연면적 1만5천㎡ 미만)의 관계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하 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p> <p>①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그 자체소방대장(위험물 안전관리법) ② 관리업자</p> <p>※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 업무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2.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시설의 유지관리</p>																															

		<p><b>예제 09</b></p> <p>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관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b>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b>하게 할 수 있다. 그 대행업무가 아닌 것은?</p> <p>① 소방시설의 점검·정비계획    ② 피난시설,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③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④ 방화구획의 유지관리</p> <p><b>해답</b> ①</p>								
3-154	(3)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점검을 실시한 경우 <b>점검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점검실적을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평가 기관”)에 통보</b> 하여야 한다.	(3)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점검을 실시한 경우 <b>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 실적(외관점검은 제외)을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평가 기관”)에 통보</b> 하여야 한다.								
3-154	② 종합정밀점검 :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② 종합정밀점검 :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b>소방시설 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b>								
3-155	<p>2. 작동기능점검</p> <table border="1" data-bbox="349 884 1227 995">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점검시기</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정밀점검대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li> <li>• 그 밖의 대상: 연중 실시한다.</li> </ul> </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점검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정밀점검대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li> <li>• 그 밖의 대상: 연중 실시한다.</li> </ul>	<table border="1" data-bbox="1249 839 2123 1038">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점검시기</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정밀점검대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li> <li>• 그 밖의 대상: 연중 실시한다.</li> <li>•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보고하는 대상 : 건축물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li> </ul> </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점검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정밀점검대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li> <li>• 그 밖의 대상: 연중 실시한다.</li> <li>•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보고하는 대상 : 건축물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li> </ul>
구분	내용									
점검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정밀점검대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li> <li>• 그 밖의 대상: 연중 실시한다.</li> </ul>									
구분	내용									
점검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정밀점검대상: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li> <li>• 그 밖의 대상: 연중 실시한다.</li> <li>•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보고하는 대상 : 건축물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li> </ul>									
3-155	3. 종합정밀점검 표 교체	<table border="1" data-bbox="1267 1062 2123 146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대상</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대상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면적 5천 m<sup>2</sup>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제조소등을 제외한다)</li> <li>- 아파트 : 연면적이 5천 m<sup>2</sup> 이상이고 층수가 11층 이상</li> </ul> </li> <li>• 산후조리업, 노래연습장업, 고시원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비디오물감상실업, 안마 시설소, 영화상영관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천 m<sup>2</sup> 이상인 것</li> </ul> <p><b>참고</b> (지리산 노고단 유비 안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연설비 설치된 터널</li> <li>•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이 1천 m<sup>2</sup> 이상인 것으로서 <b>속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b>.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li> </ul> </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대상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면적 5천 m<sup>2</sup>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제조소등을 제외한다)</li> <li>- 아파트 : 연면적이 5천 m<sup>2</sup> 이상이고 층수가 11층 이상</li> </ul> </li> <li>• 산후조리업, 노래연습장업, 고시원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비디오물감상실업, 안마 시설소, 영화상영관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천 m<sup>2</sup> 이상인 것</li> </ul> <p><b>참고</b> (지리산 노고단 유비 안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연설비 설치된 터널</li> <li>•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이 1천 m<sup>2</sup> 이상인 것으로서 <b>속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b>.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li> </ul>				
구분	내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대상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면적 5천 m<sup>2</sup>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제조소등을 제외한다)</li> <li>- 아파트 : 연면적이 5천 m<sup>2</sup> 이상이고 층수가 11층 이상</li> </ul> </li> <li>• 산후조리업, 노래연습장업, 고시원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비디오물감상실업, 안마 시설소, 영화상영관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천 m<sup>2</sup> 이상인 것</li> </ul> <p><b>참고</b> (지리산 노고단 유비 안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연설비 설치된 터널</li> <li>•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이 1천 m<sup>2</sup> 이상인 것으로서 <b>속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b>.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li> </ul>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272 92 1384 245">점검자의 자격</td> <td data-bbox="1384 92 2123 2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1명 이상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조 점검자로 둘 수 있다.)</li> <li>소방시설관리업자(점검인력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li> <li>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따라야 한다.</li> </ul> </td> </tr> <tr> <td data-bbox="1272 245 1384 284">점검방법</td> <td data-bbox="1384 245 2123 284">소방시설별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한다.</td> </tr> <tr> <td data-bbox="1272 284 1384 507">점검횟수</td> <td data-bbox="1384 284 2123 5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 1회 이상</li> <li>지하층 포함한 30층 이상, 높이 120m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m<sup>2</sup> 이상인 소방대상물은 반기별로 1회 이상</li> <li>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방재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 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정밀점검을 면제 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li> </ul> </td> </tr> <tr> <td data-bbox="1272 507 1384 842">점검시기</td> <td data-bbox="1384 507 2123 8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기관인 학교의 경우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 6월 말까지 실시한다.</li> </ul> </li> <li>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신축 건축물은 검사필증을 받은 다음 연도부터 실시한다.</li> <li>공공기관의 장은 월 1회 이상 외관점검(육안 신체감감을 이용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시자 :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관리사포함, 등록된 기술인력)</li> <li>종합, 작동점검 시에는 제외하며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li> <li>전기시설, 가스시설을 해당 관계법에 따라 점검, 검사를 받아야 한다.</li> </ul> </li> </ul> </td> </tr> </table>	점검자의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1명 이상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조 점검자로 둘 수 있다.)</li> <li>소방시설관리업자(점검인력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li> <li>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따라야 한다.</li> </ul>	점검방법	소방시설별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한다.	점검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 1회 이상</li> <li>지하층 포함한 30층 이상, 높이 120m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m<sup>2</sup> 이상인 소방대상물은 반기별로 1회 이상</li> <li>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방재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 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정밀점검을 면제 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li> </ul>	점검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기관인 학교의 경우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 6월 말까지 실시한다.</li> </ul> </li> <li>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신축 건축물은 검사필증을 받은 다음 연도부터 실시한다.</li> <li>공공기관의 장은 월 1회 이상 외관점검(육안 신체감감을 이용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시자 :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관리사포함, 등록된 기술인력)</li> <li>종합, 작동점검 시에는 제외하며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li> <li>전기시설, 가스시설을 해당 관계법에 따라 점검, 검사를 받아야 한다.</li> </ul> </li> </ul>																
점검자의 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1명 이상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조 점검자로 둘 수 있다.)</li> <li>소방시설관리업자(점검인력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li> <li>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따라야 한다.</li> </ul>																									
점검방법	소방시설별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한다.																									
점검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 1회 이상</li> <li>지하층 포함한 30층 이상, 높이 120m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m<sup>2</sup> 이상인 소방대상물은 반기별로 1회 이상</li> <li>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방재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 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정밀점검을 면제 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li> </ul>																									
점검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기관인 학교의 경우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 6월 말까지 실시한다.</li> </ul> </li> <li>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신축 건축물은 검사필증을 받은 다음 연도부터 실시한다.</li> <li>공공기관의 장은 월 1회 이상 외관점검(육안 신체감감을 이용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시자 :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관리사포함, 등록된 기술인력)</li> <li>종합, 작동점검 시에는 제외하며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li> <li>전기시설, 가스시설을 해당 관계법에 따라 점검, 검사를 받아야 한다.</li> </ul> </li> </ul>																									
3-156	(1) 점검인력 1단위	(1) 점검인력 1단위 소방시설관리사 1명과 보조 기술인력(“보조인력”) 2명 ※ 소규모점검(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물) - 보조 인력 1명																								
3-156	(3) 점검한도면적 표 소규모 점검 추가	(3) 점검한도면적 점검한도 면적 :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 <table border="1" data-bbox="1272 1257 2123 1471"> <thead> <tr> <th>구 분</th> <th>1단위</th> <th>1단위+보조1</th> <th>1단위+보조2</th> <th>1단위+보조3</th> <th>1단위+보조4</th> </tr> </thead> <tbody> <tr> <td>종합정밀점검</td> <td>10,000 m<sup>2</sup></td> <td>13,000 m<sup>2</sup></td> <td>16,000 m<sup>2</sup></td> <td>19,000 m<sup>2</sup></td> <td>22,000 m<sup>2</sup></td> </tr> <tr> <td>작동기능점검</td> <td>12,000 m<sup>2</sup></td> <td>15,500 m<sup>2</sup></td> <td>19,000 m<sup>2</sup></td> <td>22,500 m<sup>2</sup></td> <td>26,000 m<sup>2</sup></td> </tr> <tr> <td>소규모점검</td> <td>3,500 m<sup>2</sup></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1단위	1단위+보조1	1단위+보조2	1단위+보조3	1단위+보조4	종합정밀점검	10,000 m <sup>2</sup>	13,000 m <sup>2</sup>	16,000 m <sup>2</sup>	19,000 m <sup>2</sup>	22,000 m <sup>2</sup>	작동기능점검	12,000 m <sup>2</sup>	15,500 m <sup>2</sup>	19,000 m <sup>2</sup>	22,500 m <sup>2</sup>	26,000 m <sup>2</sup>	소규모점검	3,500 m <sup>2</sup>	-	-	-	-
구 분	1단위	1단위+보조1	1단위+보조2	1단위+보조3	1단위+보조4																					
종합정밀점검	10,000 m <sup>2</sup>	13,000 m <sup>2</sup>	16,000 m <sup>2</sup>	19,000 m <sup>2</sup>	22,000 m <sup>2</sup>																					
작동기능점검	12,000 m <sup>2</sup>	15,500 m <sup>2</sup>	19,000 m <sup>2</sup>	22,500 m <sup>2</sup>	26,000 m <sup>2</sup>																					
소규모점검	3,500 m <sup>2</sup>	-	-	-	-																					

3-156	(4) ① 관리업자가 하루 동안 점검한 면적은 실제 점검면적에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점검면적”)으로 하되, 점검면적은 점검한도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관리업자가 하루 동안 점검한 면적은 실제 점검면적 (터널·지하구 : 길이 × 평균폭)에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점검면적”)으로 하되, 점검면적은 점검한도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158	②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아파트의 세대수(이하 “점검한도 세대수”라 한다) <table border="1" data-bbox="367 483 1214 676"> <thead> <tr> <th>구 분</th> <th>1단위</th> <th>1단위+보조1</th> <th>1단위+보조2</th> <th>1단위+보조3</th> <th>1단위+보조4</th> </tr> </thead> <tbody> <tr> <td>종합정밀점검</td> <td>300세대</td> <td>370</td> <td>440</td> <td>510</td> <td>580</td> </tr> <tr> <td>작동기능점검</td> <td>350세대</td> <td>440</td> <td>530</td> <td>620</td> <td>710</td> </tr> </tbody> </table>	구 분	1단위	1단위+보조1	1단위+보조2	1단위+보조3	1단위+보조4	종합정밀점검	300세대	370	440	510	580	작동기능점검	350세대	440	530	620	710	<table border="1" data-bbox="1252 418 2107 652"> <thead> <tr> <th>구 분</th> <th>1단위</th> <th>1단위+보조1</th> <th>1단위+보조2</th> <th>1단위+보조3</th> <th>1단위+보조4</th> </tr> </thead> <tbody> <tr> <td>종합정밀점검</td> <td>300세대</td> <td>370</td> <td>440</td> <td>510</td> <td>580</td> </tr> <tr> <td>작동기능점검</td> <td>350세대</td> <td>440</td> <td>530</td> <td>620</td> <td>710</td> </tr> <tr> <td>소규모점검</td> <td>90세대</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1단위	1단위+보조1	1단위+보조2	1단위+보조3	1단위+보조4	종합정밀점검	300세대	370	440	510	580	작동기능점검	350세대	440	530	620	710	소규모점검	90세대	-	-	-	-
구 분	1단위	1단위+보조1	1단위+보조2	1단위+보조3	1단위+보조4																																							
종합정밀점검	300세대	370	440	510	580																																							
작동기능점검	350세대	440	530	620	710																																							
구 분	1단위	1단위+보조1	1단위+보조2	1단위+보조3	1단위+보조4																																							
종합정밀점검	300세대	370	440	510	580																																							
작동기능점검	350세대	440	530	620	710																																							
소규모점검	90세대	-	-	-	-																																							
3-158	(6) 아파트와 아파트 외 용도의 건축물을 하루에 점검할 때 <table border="1" data-bbox="367 847 1214 975"> <thead> <tr> <th rowspan="2">점검면적</th> <th>종합정밀점검</th> <th>점검세대수 × 33.3</th> </tr> </thead> <tbody> <tr> <th>작동기능점검</th> <th>점검세대수 × 34.3</th> </tr> </tbody> </table>	점검면적	종합정밀점검	점검세대수 × 33.3	작동기능점검	점검세대수 × 34.3	아파트와 아파트 외 용도의 건축물을 하루에 점검할 때 <table border="1" data-bbox="1265 868 2112 995"> <thead> <tr> <th rowspan="3">점검면적</th> <th>종합정밀점검</th> <th>점검세대수 × 33.3</th> </tr> </thead> <tbody> <tr> <th>작동기능점검</th> <th>점검세대수 × 34.3</th> </tr> <tr> <th>소규모점검</th> <th>점검세대수 × 38.9</th> </tr> </tbody> </table>	점검면적	종합정밀점검	점검세대수 × 33.3	작동기능점검	점검세대수 × 34.3	소규모점검	점검세대수 × 38.9																														
점검면적	종합정밀점검		점검세대수 × 33.3																																									
	작동기능점검	점검세대수 × 34.3																																										
점검면적	종합정밀점검	점검세대수 × 33.3																																										
	작동기능점검	점검세대수 × 34.3																																										
	소규모점검	점검세대수 × 38.9																																										
3-159	20.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표	<table border="1" data-bbox="1247 1098 2134 1398"> <tr> <td>평가위원회</td> <td> <b>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b>는 우수 소방대상물 선정 등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2명 이상으로 <b>구성하여 운영</b>            1. 소방기술사(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소방 관련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            4.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소방시설관리사 제외         </td> </tr> </table> <p>※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소방대상물의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운영·포상의종류·명칭 및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표지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평가위원회	<b>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b> 는 우수 소방대상물 선정 등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2명 이상으로 <b>구성하여 운영</b> 1. 소방기술사(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소방 관련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 4.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소방시설관리사 제외																																								
평가위원회	<b>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b> 는 우수 소방대상물 선정 등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2명 이상으로 <b>구성하여 운영</b> 1. 소방기술사(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소방 관련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 4.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소방시설관리사 제외																																											



3-162	<p><b>3</b> 자격의 취소~~ (7), (8)번 삭제</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위반사항</th> <th colspan="3">행정처분기준</th> </tr> <tr> <th>1차</th> <th>2차</th> <th>3차</th> </tr> </thead> <tbody> <tr> <td>(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td> <td>자격취소</td> <td></td> <td></td> </tr> <tr> <td>(2) 소방시설관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td> <td>자격취소</td> <td></td> <td></td> </tr> <tr> <td>(3)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td> <td>자격취소</td> <td></td> <td></td> </tr> <tr> <td>(4)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td> <td>자격취소</td> <td></td> <td></td> </tr> <tr> <td>(5)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td> <td>경고</td> <td>6월</td> <td>자격취소</td> </tr> <tr> <td>(6)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td> <td>경고</td> <td>6월</td> <td>자격취소</td> </tr> </tbody> </table>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자격취소			(2) 소방시설관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자격취소			(3)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자격취소			(4)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취소			(5)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경고	6월	자격취소	(6)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경고	6월	자격취소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자격취소																																
(2) 소방시설관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자격취소																																
(3)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자격취소																																
(4)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취소																																
(5)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경고	6월	자격취소																														
(6)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경고	6월	자격취소																														
3-165페이지	(2) 장비의 기준 표 교체	<table border="1"> <thead> <tr> <th>소방시설</th> <th>장비 및 규격</th> <th>소방시설</th> <th>장비 및 규격</th> </tr> </thead> <tbody> <tr> <td>공통시설</td> <td>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td> <td>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td> <td>조도계(최소눈금이 0.1 Lux 이하인 것)</td> </tr> <tr> <td>소화기구</td> <td>저울</td> <td>누전경보기</td> <td>누전계 - 누전전류 측정용</td> </tr> <tr> <td>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td> <td>소화전밸브압력계</td> <td>무선통신보조설비</td> <td>무선기(통화시험용)</td> </tr> <tr> <td>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td> <td>헤드결합랜치</td> <td>제연설비</td> <td>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td> </tr> <tr> <td>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td> <td>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td> <td>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통합감시시설</td> <td>열·연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시험기 연결폴대· 음량계</td> </tr> </tbody> </table>	소방시설	장비 및 규격	소방시설	장비 및 규격	공통시설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조도계(최소눈금이 0.1 Lux 이하인 것)	소화기구	저울	누전경보기	누전계 - 누전전류 측정용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전밸브압력계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통화시험용)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헤드결합랜치	제연설비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통합감시시설	열·연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시험기 연결폴대· 음량계							
소방시설	장비 및 규격	소방시설	장비 및 규격																														
공통시설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조도계(최소눈금이 0.1 Lux 이하인 것)																														
소화기구	저울	누전경보기	누전계 - 누전전류 측정용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전밸브압력계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통화시험용)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헤드결합랜치	제연설비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통합감시시설	열·연감지기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시험기 연결폴대· 음량계																														

		<table border="1"> <tr> <td>방수압력 측정계</td> <td></td> <td>절연저항계</td> <td></td> <td>전류전압 측정계</td> <td></td> </tr> <tr> <td>저울</td> <td></td> <td>소화전밸브 압력계</td> <td></td> <td>헤드결합랜치</td> <td></td> </tr> <tr> <td>검량계</td> <td></td> <td>기동관누설 시험기</td> <td></td> <td>조도계</td> <td></td> </tr> <tr> <td>누전계</td> <td></td> <td>무선기</td> <td></td> <td>풍속풍압계</td> <td></td> </tr> <tr> <td>폐쇄력측정기</td> <td></td> <td>차압계</td> <td></td> <td>열·연감지기 시험기</td> <td></td> </tr> <tr> <td>공기주입시험기</td> <td></td> <td>감지기시험기 연결폴대</td> <td></td> <td>음량계</td> <td></td> </tr> </table>	방수압력 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 측정계		저울		소화전밸브 압력계		헤드결합랜치		검량계		기동관누설 시험기		조도계		누전계		무선기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		열·연감지기 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시험기 연결폴대		음량계	
방수압력 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 측정계																																		
저울		소화전밸브 압력계		헤드결합랜치																																		
검량계		기동관누설 시험기		조도계																																		
누전계		무선기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		열·연감지기 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시험기 연결폴대		음량계																																		
3-166	<p><b>10</b> 점검실명제 표 교체</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작동기능점검의 기록표</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종합정밀점검의 기록표</p>  </div> </div>																																				

3-166

**10** 점검실명제 표 교체

작동기능점검의 기록표

소방시설 점검기록표

- 점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점검업체명:
- 점검자: 소방시설관리사            외   명
- 점검의 구분: 작동기능점검
-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완료하고 같은 법 제33조의4 제1항에 따라 이 표지를 붙입니다.

대상명 :

종합정밀점검의 기록표

소방시설 점검기록표







- 점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점검업체명:
- 점검자: 소방시설관리사            외   명
- 점검의 구분: 종합정밀점검
-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완료하고 같은 법 제33조의4 제1항에 따라 이 표지를 붙입니다.

대상명 :

3-167	<p>1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p> <p>(2)</p> <p>(3)</p> <p>④ 방기술인력</p>	<p>(2) 점검능력의 평가 목적 - 관계인 또는 건축주가 <b>적정한 관리업자를 선정</b>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관리업자의 <u>점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u> 할 수 있다.</p> <p>(3) 점검능력을 평가받으려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제출서류 - 매년 2월 15일까지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p> <p style="text-align: center;"><b>※ 거짓으로 제출한 자 - 200만원 이하의 벌금</b></p> <p>④ 소방기술인력</p>																											
3-169	<p>(1) 표</p> <p>(4), (5), (7), (9) 삭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위반사항</th> <th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행정처분기준</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1차</th> <th style="text-align: center;">2차</th> <th style="text-align: center;">3차</th> </tr> </thead> <tbody> <tr> <td>(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등록취소</td> <td></td> <td></td> </tr> <tr> <td>(2)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등록취소</td> <td></td> <td></td> </tr> <tr> <td>(3)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등록취소</td> <td></td> <td></td> </tr> <tr> <td>(4)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한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경고</td> <td style="text-align: center;">3개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등록취소</td> </tr> <tr> <td>(5)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기술인력이 퇴직하거나 해임되어 30일 이내에 재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td> <td style="text-align: center;">경고</td> <td style="text-align: center;">3개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등록취소</td> </tr> </tbody> </table>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록취소			(2)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			(3)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등록취소			(4)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한 경우	경고	3개월	등록취소	(5)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기술인력이 퇴직하거나 해임되어 30일 이내에 재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경고	3개월	등록취소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록취소																												
(2)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																												
(3)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등록취소																												
(4) 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 한 경우	경고	3개월	등록취소																										
(5)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기술인력이 퇴직하거나 해임되어 30일 이내에 재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경고	3개월	등록취소																										
3-170	<p>(2) 개별기준</p> <p>㉠ 방염처리업 표 변경</p> <p>㉡ 소방시설관리업 표 변경</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위반사항</th> <th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행정처분기준</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1차</th> <th style="text-align: center;">2차</th> <th style="text-align: center;">3차</th> </tr> </thead> <tbody> <tr> <td>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영업정지 3개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위반사항</th> <th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행정처분기준</th> </tr> <tr> <th style="text-align: center;">1차</th> <th style="text-align: center;">2차</th> <th style="text-align: center;">3차</th> </tr> </thead> <tbody> <tr> <td>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영업정지3개 월</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3개 월	-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3개 월	-																										

3-171	<p><b>1</b> 소방용품 표</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 data-bbox="1249 92 1444 132">구 분</th> <th data-bbox="1444 92 2123 132">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1249 132 1344 308" rowspan="4">형식 승인 제품</td> <td data-bbox="1344 132 1444 308">소화 설비</td> <td data-bbox="1444 132 2123 308">소화기구(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제외한다), 자동소화장치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송수구, 관창(菅槍),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선택밸브</td> </tr> <tr> <td data-bbox="1344 308 1444 411">경보 설비</td> <td data-bbox="1444 308 2123 411">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경종만 한한다)</td> </tr> <tr> <td data-bbox="1344 411 1444 531">피난 설비</td> <td data-bbox="1444 411 2123 531">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공기호흡기(충전기를 포함한다) 유도등(피난구, 통로, 객석) 및 예비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td> </tr> <tr> <td data-bbox="1344 531 1444 691">소화용</td> <td data-bbox="1444 531 2123 691">소화약제(소화설비용(자동소화장치, 포, CO<sub>2</sub>, 할론, 청정, 분말, 강화액)에 한함) 방염제(방염액·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td> </tr> </tbody> </table>	구 분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형식 승인 제품	소화 설비	소화기구(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제외한다), 자동소화장치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송수구, 관창(菅槍),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선택밸브	경보 설비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경종만 한한다)	피난 설비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공기호흡기(충전기를 포함한다) 유도등(피난구, 통로, 객석) 및 예비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소화용	소화약제(소화설비용(자동소화장치, 포, CO <sub>2</sub> , 할론, 청정, 분말, 강화액)에 한함) 방염제(방염액·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
구 분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형식 승인 제품	소화 설비	소화기구(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제외한다), 자동소화장치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송수구, 관창(菅槍),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선택밸브												
	경보 설비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경종만 한한다)												
	피난 설비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를 포함한다) 공기호흡기(충전기를 포함한다) 유도등(피난구, 통로, 객석) 및 예비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소화용	소화약제(소화설비용(자동소화장치, 포, CO <sub>2</sub> , 할론, 청정, 분말, 강화액)에 한함) 방염제(방염액·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												
3-173	<p><b>4</b> 형식승인의 취소 등 표 내용 변경</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249 697 1429 810">6개월 이내의 제품검사의 중지</td> <td data-bbox="1429 697 2123 8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품검사 시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li> </ul> </td> </tr> </table>	6개월 이내의 제품검사의 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품검사 시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li> </ul>										
6개월 이내의 제품검사의 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품검사 시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li> </ul>													
3-177	<p><b>6</b> 실무교육</p>	<p>(1)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등</p> <p>①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기간 -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고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p> <p>② 실무교육</p> <p>㉠ 교육일정·대상 등 실무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 실시 10일전까지 교육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 소방안전관리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받고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3-178	32. 권한의 위임 표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240 92 1339 421" rowspan="4">소방 방재 청장의 업무</td> <td data-bbox="1339 92 1912 226">1.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표지 발급 및 관계인에 대한 포상 2. 소방용품에 대한 수거·폐기 또는 교체 등의 명령</td> <td data-bbox="1912 92 2125 226">시·도지사에게 위임</td> </tr> <tr> <td> </td> <td> </td> </tr> <tr> <td> </td> <td> </td> </tr> <tr> <td> </td> <td> </td> </tr> </table>	소방 방재 청장의 업무	1.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표지 발급 및 관계인에 대한 포상 2. 소방용품에 대한 수거·폐기 또는 교체 등의 명령	시·도지사에게 위임																					
소방 방재 청장의 업무	1.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표지 발급 및 관계인에 대한 포상 2. 소방용품에 대한 수거·폐기 또는 교체 등의 명령	시·도지사에게 위임																								
3-185 문제4	<p>① 1천~~ 해설</p> <table border="1"> <thead> <tr> <th>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th> <th>바닥면적의합계</th> <th>바닥면적 이상시해당시설 등</th> </tr> </thead> <tbody> <tr> <td>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등) 등의 소매점</td> <td>1천 m<sup>2</sup> 미만</td> <td>판매시설 (상점)</td> </tr> <tr> <td>고시원,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td> <td>1천 m<sup>2</sup> 미만</td> <td>숙박시설 등</td> </tr> <tr> <td>학원</td> <td>500 m<sup>2</sup> 미만</td> <td>자동차학원, 무도학원은 제외</td> </tr> </tbody> </table> <p>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산후조리원, 안마원, 안마시술소, 독서실, 장의사, 동물병원 등</p>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합계	바닥면적 이상시해당시설 등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등) 등의 소매점	1천 m <sup>2</sup> 미만	판매시설 (상점)	고시원,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	1천 m <sup>2</sup> 미만	숙박시설 등	학원	500 m <sup>2</sup> 미만	자동차학원, 무도학원은 제외	<p>① 500~~</p> <table border="1"> <thead> <tr> <th>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th> <th>바닥면적의합계</th> <th>바닥면적 이상시해당시설 등</th> </tr> </thead> <tbody> <tr> <td>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등) 등의 소매점</td> <td>1천 m<sup>2</sup> 미만</td> <td>판매시설 (상점)</td> </tr> <tr> <td>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td> <td>1천 m<sup>2</sup> 미만</td> <td>판매시설 등</td> </tr> <tr> <td>학원, 고시원</td> <td>500 m<sup>2</sup> 미만</td> <td>자동차학원, 무도학원은 제외</td> </tr> </tbody> </table> <p>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산후조리원, 안마원, 안마시술소, 독서실, 장의사, 동물병원 등</p>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합계	바닥면적 이상시해당시설 등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등) 등의 소매점	1천 m <sup>2</sup> 미만	판매시설 (상점)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	1천 m <sup>2</sup> 미만	판매시설 등	학원, 고시원	500 m <sup>2</sup> 미만	자동차학원, 무도학원은 제외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합계	바닥면적 이상시해당시설 등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등) 등의 소매점	1천 m <sup>2</sup> 미만	판매시설 (상점)																								
고시원,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	1천 m <sup>2</sup> 미만	숙박시설 등																								
학원	500 m <sup>2</sup> 미만	자동차학원, 무도학원은 제외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	바닥면적의합계	바닥면적 이상시해당시설 등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등) 등의 소매점	1천 m <sup>2</sup> 미만	판매시설 (상점)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	1천 m <sup>2</sup> 미만	판매시설 등																								
학원, 고시원	500 m <sup>2</sup> 미만	자동차학원, 무도학원은 제외																								
4-15	<table border="1"> <tr> <td>과망간산염류 - MnO<sub>4</sub></td> <td rowspan="2">Ⅲ</td> <td rowspan="2">1,000 kg</td> </tr> <tr> <td>중크롬산염류 - CrO<sub>7</sub></td> </tr> </table>	과망간산염류 - MnO <sub>4</sub>	Ⅲ	1,000 kg	중크롬산염류 - CrO <sub>7</sub>	<table border="1"> <tr> <td>과망간산염류 - MnO<sub>4</sub></td> <td rowspan="2">Ⅲ</td> <td rowspan="2">1,000 kg</td> </tr> <tr> <td>중크롬산염류 - Cr<sub>2</sub>O<sub>7</sub></td> </tr> </table>	과망간산염류 - MnO <sub>4</sub>	Ⅲ	1,000 kg	중크롬산염류 - Cr <sub>2</sub> O <sub>7</sub>																
과망간산염류 - MnO <sub>4</sub>	Ⅲ	1,000 kg																								
중크롬산염류 - CrO <sub>7</sub>																										
과망간산염류 - MnO <sub>4</sub>	Ⅲ	1,000 kg																								
중크롬산염류 - Cr <sub>2</sub> O <sub>7</sub>																										
4-19	<table border="1">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중크롬산염류 - CrO<sub>7</sub></td> <td style="text-align: center;">중크롬산나트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중크롬산칼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중크롬산암모늄 </td> </tr> </table>	중크롬산염류 - CrO <sub>7</sub>	중크롬산나트륨	중크롬산칼륨	중크롬산암모늄 	<table border="1">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중크롬산염류 - Cr<sub>2</sub>O<sub>7</sub></td> <td style="text-align: center;">중크롬산나트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중크롬산칼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중크롬산암모늄 </td> </tr> </table>	중크롬산염류 - Cr <sub>2</sub> O <sub>7</sub>	중크롬산나트륨	중크롬산칼륨	중크롬산암모늄 																
중크롬산염류 - CrO <sub>7</sub>	중크롬산나트륨																									
	중크롬산칼륨																									
	중크롬산암모늄 																									
중크롬산염류 - Cr <sub>2</sub> O <sub>7</sub>	중크롬산나트륨																									
	중크롬산칼륨																									
	중크롬산암모늄 																									
4-22 문제10 해설	제 1류 위험물의 경우 분해온도는 NH <sub>4</sub> - 를 가지고 있으면 낮은 경향을 보인다.	제 1류 위험물의 경우 분해온도는 NH <sub>4</sub> <sup>+</sup> 를 가지고 있으면 낮은 경향을 보인다.																								
4-70 문제28 해설	특수인화물 중 C <sub>2</sub> H <sub>5</sub> OC <sub>2</sub> H <sub>5</sub> (에테르), CH <sub>3</sub> CHO(아세트알데히드)와 CH <sub>3</sub> CH <sub>2</sub> CHO(산화프로필렌)은 물에 잘 녹는다.	특수인화물 중 CH <sub>3</sub> CHO(아세트알데히드)와 CH <sub>3</sub> CH <sub>2</sub> CHO(산화프로필렌)은 물에 잘 녹는다.																								

4-188	<b>6</b> 특례 <b>6</b>	<b>6</b> 이동저장탱크 : 불활성기체 봉입장치 설치(20 kPa 이하의 압력)						
4-202	<b>6</b> 내용 변경 <b>7</b> (1) (2)	<b>6</b> (1)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 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 (2) 주유취급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 (3)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4)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 (5) 주유 또는 등유, 경유를 채우기 위한 작업장 (6) 주유취급소의 관계자가 거주하는 주거시설 (7)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자동차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8) 건축물 중 주유취급소의 직원 외의 자가 출입하는 (1), (2), (3)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면적의 합은 1,000 m <sup>2</sup> 를 초과할 수 없다. <b>7</b> (1) 벽, 기둥, 바닥, 보 및 지붕 -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 <b>6</b> 의 (8)에서 면적의 합이 500 m <sup>2</sup> 초과 시 벽을 내화구조로 할 것 (2) 창 및 출입구 - 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로 된 문을 설치 ※ <b>6</b> 의 (8)에서 면적의 합이 500 m <sup>2</sup> 초과하는 주유취급소로서 하나의 구획된 실의 면적이 500 m <sup>2</sup> 초과하거나 2층 이상의 층에 설치 시 2면 이상의 벽에 각각 출입구 설치						
4-229	표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245 1110 1352 1232">주유취급소</td> <td data-bbox="1361 1110 1630 1232">4-202 페이지 <b>6</b>의 (8)에서 면적의 합이 500 m<sup>2</sup> 초과</td> <td data-bbox="1639 1110 1899 1232">옥내주유취급소</td> <td data-bbox="1908 1110 2123 1232">옥내주유취급소 이외의 것으로서 1에 해당하지 않는 것</td> </tr> </table>	주유취급소	4-202 페이지 <b>6</b> 의 (8)에서 면적의 합이 500 m <sup>2</sup> 초과	옥내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 이외의 것으로서 1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유취급소	4-202 페이지 <b>6</b> 의 (8)에서 면적의 합이 500 m <sup>2</sup> 초과	옥내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 이외의 것으로서 1에 해당하지 않는 것					
4-230	표 추가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245 1251 1612 1327">주유취급소</td> <td data-bbox="1621 1251 2123 1327">           1. 스프링클러설비(건축물에 한함)            2. 소형수동식소화기등(소요단위에 적합하게)         </td> </tr> </table>	주유취급소	1. 스프링클러설비(건축물에 한함) 2. 소형수동식소화기등(소요단위에 적합하게)				
주유취급소	1. 스프링클러설비(건축물에 한함) 2. 소형수동식소화기등(소요단위에 적합하게)							
4-234	표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49 1347 645 1493">포소화설비</td> <td data-bbox="654 1347 1120 1493">방호대상물을 ~</td> <td data-bbox="1128 1347 1218 1493">-</td> </tr> </table>	포소화설비	방호대상물을 ~	-	<table border="1"> <tr> <td data-bbox="1245 1347 1541 1493">포소화설비</td> <td data-bbox="1550 1347 2016 1493"> <math display="block">N \times Q \times T</math>           N : 호스접결구수 옥내, 옥외 - 최대 4개            Q : 옥내 200l/min, 옥외400 l/min            T : 30분         </td> <td data-bbox="2024 1347 2123 1493">0.35 MPa 이상</td> </tr> </table>	포소화설비	$N \times Q \times T$ N : 호스접결구수 옥내, 옥외 - 최대 4개 Q : 옥내 200l/min, 옥외400 l/min T : 30분	0.35 MPa 이상
포소화설비	방호대상물을 ~	-						
포소화설비	$N \times Q \times T$ N : 호스접결구수 옥내, 옥외 - 최대 4개 Q : 옥내 200l/min, 옥외400 l/min T : 30분	0.35 MPa 이상						

5-3	<b>1</b> 설치대상	※ 노유자시설 -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1/2 이상으로 <table border="1" data-bbox="1249 140 2130 316"> <tr> <td data-bbox="1249 140 1458 256">자동소화장치</td> <td data-bbox="1464 140 1673 256">고체에어로졸식, 가스식, 분말식, 캐비닛형</td> <td colspan="2" data-bbox="1680 140 2130 256">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td> </tr> <tr> <td></td> <td data-bbox="1464 261 1673 316">주방용</td> <td colspan="2" data-bbox="1680 261 2130 316">아파트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전층</td> </tr> </table>	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식, 가스식, 분말식, 캐비닛형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주방용	아파트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전층																			
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식, 가스식, 분말식, 캐비닛형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주방용	아파트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전층																										
5-5	자동확산소화장치	자동확산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는 자동확산소화장치에 속하지 않음																										
5-7	자동확산소화장치는 모두 수정해야 함	자동확산소화기																										
5-18	· 터널 ※ 물분무화설비, 제연설비는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등급에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에 설치  이하 페이지 밑줄 친 부분 동일 함	· 터널 ※ 물분무화설비, 제연설비는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에 설치  · 특수가연물 저장하는 공장, 창고 <table border="1" data-bbox="1249 679 2130 759"> <tr> <td data-bbox="1249 679 1659 719">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공장, 창고</td> <td data-bbox="1666 679 1852 719">자탐</td> <td data-bbox="1859 679 2045 719">옥내, 옥외</td> <td data-bbox="2051 679 2130 719">스프</td> </tr> <tr> <td data-bbox="1249 724 1659 759">저장배수</td> <td data-bbox="1666 724 1852 759">500배 이상</td> <td data-bbox="1859 724 2045 759">750배 이상</td> <td data-bbox="2051 724 2130 759">1,000</td> </tr> </table> ※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공장, 창고의 지붕, 외벽이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5000이상 시 스프링클러 설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공장, 창고	자탐	옥내, 옥외	스프	저장배수	500배 이상	750배 이상	1,000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공장, 창고	자탐	옥내, 옥외	스프																									
저장배수	500배 이상	750배 이상	1,000																									
5-52	<b>표 전체변경</b>	<b>설치대상</b> <table border="1" data-bbox="1088 959 2119 1246"> <tr> <td data-bbox="1088 959 1323 1082" rowspan="2">문화 및 집회시설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주요구조부가 목재인 것은 제외) 운동시설 (물놀이형 시설 제외)</td> <td data-bbox="1330 959 1473 1082">무대부</td> <td data-bbox="1480 959 1608 1082" rowspan="2">면적</td> <td data-bbox="1615 959 1839 1034">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의층</td> <td data-bbox="1845 959 2040 1034">300 m<sup>2</sup> 이상</td> <td data-bbox="2047 959 2119 1246" rowspan="4">모든 층</td> </tr> <tr> <td></td> <td data-bbox="1615 1038 1839 1082">그 밖의 층</td> <td data-bbox="1845 1038 2040 1082">500 m<sup>2</sup> 이상</td> </tr> <tr> <td data-bbox="1088 1086 1323 1209" rowspan="2"></td> <td data-bbox="1330 1086 1473 1209" rowspan="2">영화상영관</td> <td data-bbox="1480 1086 1608 1209" rowspan="2">층의 바닥면적</td> <td data-bbox="1615 1086 1839 1161">지하층 무창층</td> <td data-bbox="1845 1086 2040 1161">500 m<sup>2</sup> 이상</td> </tr> <tr> <td data-bbox="1615 1166 1839 1209">그 밖의 층</td> <td data-bbox="1845 1166 2040 1209">1,000 m<sup>2</sup> 이상</td> </tr> <tr> <td data-bbox="1088 1214 1323 1246"></td> <td data-bbox="1330 1214 1473 1246">수용인원</td> <td colspan="3" data-bbox="1480 1214 2040 1246">100명 이상</td> </tr> </table> <table border="1" data-bbox="1088 1278 2119 1473"> <tr> <td data-bbox="1088 1278 1368 1374">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td> <td data-bbox="1375 1278 2040 1374">바닥면적 합계가 5천 m<sup>2</sup> 이상 또는 수용인원 500명 이상 ※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2천 5백 m<sup>2</sup> 이상 또는 수용인원 250명 이상</td> <td data-bbox="2047 1278 2119 1473" rowspan="2">모든 층</td> </tr> <tr> <td data-bbox="1088 1378 1368 1473">창고시설 (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td> <td data-bbox="1375 1378 2040 1473">바닥면적 합계가 5천m<sup>2</sup> 이상 ※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2천 5백 m<sup>2</sup> 이상</td> </tr> </table>	문화 및 집회시설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주요구조부가 목재인 것은 제외) 운동시설 (물놀이형 시설 제외)	무대부	면적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의층	300 m <sup>2</sup> 이상	모든 층		그 밖의 층	500 m <sup>2</sup> 이상		영화상영관	층의 바닥면적	지하층 무창층	500 m <sup>2</sup> 이상	그 밖의 층	1,000 m <sup>2</sup> 이상		수용인원	100명 이상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바닥면적 합계가 5천 m <sup>2</sup> 이상 또는 수용인원 500명 이상 ※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2천 5백 m <sup>2</sup> 이상 또는 수용인원 250명 이상	모든 층	창고시설 (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	바닥면적 합계가 5천m <sup>2</sup> 이상 ※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2천 5백 m <sup>2</sup>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주요구조부가 목재인 것은 제외) 운동시설 (물놀이형 시설 제외)	무대부	면적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의층		300 m <sup>2</sup> 이상	모든 층																					
			그 밖의 층	500 m <sup>2</sup> 이상																								
	영화상영관	층의 바닥면적	지하층 무창층	500 m <sup>2</sup> 이상																								
			그 밖의 층	1,000 m <sup>2</sup> 이상																								
	수용인원	100명 이상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바닥면적 합계가 5천 m <sup>2</sup> 이상 또는 수용인원 500명 이상 ※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2천 5백 m <sup>2</sup> 이상 또는 수용인원 250명 이상	모든 층																										
창고시설 (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	바닥면적 합계가 5천m <sup>2</sup> 이상 ※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2천 5백 m <sup>2</sup> 이상																											

		<table border="1"> <tr> <td colspan="2" data-bbox="1102 92 1778 134"><b>층수가 11층 이상</b></td> <td data-bbox="1778 92 2033 207" rowspan="2"><b>모든 층</b></td> </tr> <tr> <td data-bbox="1102 134 1778 207">정신의료기관, <b>노유자시설</b>,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요양병원</td> <td data-bbox="1778 134 2033 207"><b>바닥면적 합계가 600 m<sup>2</sup> 이상</b></td> </tr> <tr> <td data-bbox="1102 207 1778 284">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기숙사 또는 <b>복합건축물</b></td> <td data-bbox="1778 207 2033 284"><b>연면적 5천 m<sup>2</sup> 이상</b></td> <td data-bbox="2033 207 2134 284"></td> </tr> <tr> <td data-bbox="1102 284 1778 360"><b>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 m를 넘는 랙식 창고</b> ※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750 m<sup>2</sup> 이상</td> <td data-bbox="1778 284 2033 360"><b>바닥면적 합계가 1천 5백 m<sup>2</sup> 이상</b></td> <td data-bbox="2033 284 2134 360"></td> </tr> <tr> <td data-bbox="1102 360 1778 437"><b>지하층·무창층(측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b> ※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500 m<sup>2</sup> 이상</td> <td data-bbox="1778 360 2033 437"><b>바닥면적이 1천 m<sup>2</sup> 이상인 층</b></td> <td data-bbox="2033 360 2134 437"></td> </tr> <tr> <td data-bbox="1102 437 1778 478"><b>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b></td> <td data-bbox="1778 437 2033 478"><b>1천 m<sup>2</sup> 이상</b></td> <td data-bbox="2033 437 2134 478"></td> </tr> <tr> <td colspan="3" data-bbox="1102 478 2134 520"><b>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b></td> </tr> <tr> <td data-bbox="1102 520 1317 596">공장 또는 창고시설</td> <td colspan="2" data-bbox="1317 520 2134 596">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td> </tr> <tr> <td data-bbox="1102 596 1317 820">교정 및 군사시설</td> <td colspan="2" data-bbox="1317 596 2134 820"> 1)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시설(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피보호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치장 </td> </tr> </table>	<b>층수가 11층 이상</b>		<b>모든 층</b>	정신의료기관, <b>노유자시설</b> ,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요양병원	<b>바닥면적 합계가 600 m<sup>2</sup> 이상</b>	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기숙사 또는 <b>복합건축물</b>	<b>연면적 5천 m<sup>2</sup> 이상</b>		<b>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 m를 넘는 랙식 창고</b> ※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750 m <sup>2</sup> 이상	<b>바닥면적 합계가 1천 5백 m<sup>2</sup> 이상</b>		<b>지하층·무창층(측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b> ※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500 m <sup>2</sup> 이상	<b>바닥면적이 1천 m<sup>2</sup> 이상인 층</b>		<b>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b>	<b>1천 m<sup>2</sup> 이상</b>		<b>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b>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1)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시설(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피보호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치장	
<b>층수가 11층 이상</b>		<b>모든 층</b>																										
정신의료기관, <b>노유자시설</b> ,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요양병원	<b>바닥면적 합계가 600 m<sup>2</sup> 이상</b>																											
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기숙사 또는 <b>복합건축물</b>	<b>연면적 5천 m<sup>2</sup> 이상</b>																											
<b>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 m를 넘는 랙식 창고</b> ※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750 m <sup>2</sup> 이상	<b>바닥면적 합계가 1천 5백 m<sup>2</sup> 이상</b>																											
<b>지하층·무창층(측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b> ※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500 m <sup>2</sup> 이상	<b>바닥면적이 1천 m<sup>2</sup> 이상인 층</b>																											
<b>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b>	<b>1천 m<sup>2</sup> 이상</b>																											
<b>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b>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1)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시설(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피보호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유치장																											
5-117	(3) 펌프 성능시험장치	(3) 펌프 성능시험장치 ① 유입구에는 개폐밸브를 둘 것 ② 개폐밸브와 유량측정장치 사이의 직선거리 및 유량측정장치와 유량조절 밸브 사이의 직선거리는 해당 유량측정장치 제조사의 설치사양에 따른다. ③ 성능시험배관의 호칭은 유량계 호칭에 따를 것																										
5-292	<b>3</b> 설치기준	<b>3</b> 설치기준 (1)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하여야 할 인명구조기구 <table border="1" data-bbox="1249 1321 2123 1487"> <tr> <td data-bbox="1249 1321 1617 1487">특정소방대상물</td> <td data-bbox="1617 1321 1751 1487">인명구조기구의 종류</td> <td data-bbox="1751 1321 2123 1487">설치 수량</td> </tr> </table>	특정소방대상물	인명구조기구의 종류	설치 수량																							
특정소방대상물	인명구조기구의 종류	설치 수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li> </ul>	방열복 인공 소생기 공기 호흡기	<p>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li> <li>·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li> <li>·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li> <li>· 지하가 중 지하상가</li> </ul>	공기 호흡기	<p>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각 층마다 갖추어 두어야 할 공기호흡기 중 일부를 직원이 상주하는 인근 사무실에 갖추어 둘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li> </ul>	공기 호흡기	<p>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대 이상 비치할 것</p>		
<p>(2) 화재 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p> <p>(3)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시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p> <p>(4) 방열복은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한 「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p>				
5-299	<b>3</b> 설치기준 표 변경			

구분	객석 유도등	피난구유도등			통로 유도등	유도표지
		대형	중형	소형		
설치장소	공연장 운동시설 관람장 집회장 (종교 집회장 포함) 유흥주점 영업 (카바레, 나이트클럽 등)	공연장, 운수시설, 관람장 집회장(종교집회장포함) 판매시설, 전시장, 지하상가 유흥주점영업 (카바레, 나이트클럽등) 의료시설, 지하철역사 위락시설, 관광숙박업 방송통신시설, 장례식장	11층 이상의 부분 숙박시설 (관광숙박업 제외) 오피스텔 지하층 무창층	기숙사, 업무시설 노유자시설, 다중이용업소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창고시설 자동차정비공장 자동차운전·정비학원 발전시설, 종교시설 (집회장 용도 제외) 수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국방·군사시설 제외) 복합건축물, 아파트	피난구 유도등 설치대상	그 밖의 대상물
<p>비고 :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대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에 중형피난구유도등 또는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중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에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p> <p>※ 복합건축물과 아파트의 경우, 주택의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5-301	③ 조도				<p>③ 조도 -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p> <p>㉠ 계단통로유도등은 바닥면 또는 디딤바닥 면으로부터 높이 2.5 m의 위치에 그 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바로 밑으로부터 수평거리로 10 m 떨어진 위치에서의 법선조도가 0.5 lx 이상이어야 한다.</p> <p>㉡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면으로부터 1 m 높이에,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면으로부터 2 m 높이에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중앙으로부터 0.5 m 떨어진 위치(그림1 또는 그림2에서 정하는 위치)의 바닥면 조도와 유도등의 전면 중앙으로부터 0.5 m 떨어진 위치의 조도가 1 lx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바닥면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그 유도등의 바로 윗부분 1 m의 높이에서 법선조도가 1 lx 이상이어야 한다.</p>	
5-302	(4) 객석유도등 ⑤				<p>⑤ 조도시험 시 바닥면 또는 디딤 바닥면에서 높이 0.5 m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바로 밑에서 0.3 m 떨어진 위치에서의 수평조도가 0.2 lx 이상이어야 한다. -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p>	
5-303	⑤ 유도표지 성능				<p>⑤ 유도표지 성능 -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p> <p>㉡ 200 lx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시킨 상태에서 다시 주위조도를 0lx 로 하여 60분간 발광 시킨 후 직선거리 20 m 떨어진 위치에서 보통시력</p>	

		<p>(시력 1.0에서 1.2)으로 유도표지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하고 3m 거리에서 표시면의 문자 또는 화살표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것</p> <p>㉔ 표시면의 휘도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휘도</p>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5분</td> <td>10분</td> <td>20분</td> <td>60분</td> </tr> <tr> <td>mcd/ 1㎡</td> <td>110mcd 이상</td> <td>50mcd 이상</td> <td>24mcd 이상</td> <td>7mcd 이상</td> </tr> </table> <p>㉕ 유도표지의 크기</p> <table border="1"> <tr> <td>단위 (mm)</td> <td>가로 길이</td> <td>세로 길이</td> </tr> <tr> <td>피난구유도표지</td> <td>360 이상</td> <td>120 이상</td> </tr> <tr> <td>복도통로유도표지</td> <td>250 이상</td> <td>85 이상</td> </tr> </table>	구분	5분	10분	20분	60분	mcd/ 1㎡	110mcd 이상	50mcd 이상	24mcd 이상	7mcd 이상	단위 (mm)	가로 길이	세로 길이	피난구유도표지	360 이상	120 이상	복도통로유도표지	250 이상	85 이상
구분	5분	10분	20분	60분																	
mcd/ 1㎡	110mcd 이상	50mcd 이상	24mcd 이상	7mcd 이상																	
단위 (mm)	가로 길이	세로 길이																			
피난구유도표지	360 이상	120 이상																			
복도통로유도표지	250 이상	85 이상																			
5-325	표	<p>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p> <p>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p>																			
5-363	<p><b>5</b> 방수기구함 설치기준</p> <p>(1) 방수기구함은 방수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기준으로 3개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m 이내에 설치할 것</p> <p>(3) 방수기구함에는 “방수기구함”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p>	<p><b>5</b> 방수기구함 설치기준</p> <p>(1) 방수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m 이내에 설치할 것</p> <p>(3) 방수기구함에는 “방수기구함”이라고 표시한 <u>축광식</u> 표지를 할 것</p>																			
6-78 63번 해설	과망간산염류(6류)	과망간산염류(1류)																			
6-125 17번 및 정답	① 60 ② 80      정답 17 ②	① 40 ② 60      정답 17 ②																			
6-166 정답	52 ①	52 ③																			